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l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30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10. 15.

4. 회부일자 : 2021. 11. 1.

Ⅱ.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Ⅲ. 주요내용

○ 남북관계,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남북 교육교류협력사업의 사업비를 감액하고 이를 예치금으로 예탁하여 향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이 15억 5,000만원에서 19억 2,231 만원으로 당초계획 대비 24%인 3억 7,231만원 증가함.

〈수입·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천원)

	수 입 계 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계		2,000,000	2,002,317	2,317		
교 ! 전	특 회 입	계 금	1,000,000	1,000,000	_		
0 2	자 수	입	_	2,317	2,317		
예 호	치	금수	1,000,000	1,000,000	_		

지 출 계 획							
구분	당초계획 (A)	변경 (B)	증감 (B-A)				
л	2,000,000	2,002,317	2,317				
비 용 자 성 사 업 비 (교수 학습활동자원)	450,000	80,000	△370,000				
기 본 경 비	O	0					
예비비 및 기타	1,550,000	1,922,317	372,317				

○ 수입계획 변경

- 이자수입 2,317천원 증가 : (당초) 0원 → (변경) 2,317천원
- ※ 2020년 12월 말 예금이자 변동액 및 2021년 6월 예금이자 반영
- 지출계획 변경
 - 「교수-학습활동지원」 3억 7,000만원 사업비 감액
 - : (당초) 4억 5,000만원 → (변경) 8,000만원
 - 「예비비 및 기타(예치금)」 3억 7,231만원 예치금 증가
 - : (당초) 15억 5,000만원 → (변경) 19억 2,231만원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Ⅴ.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1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30호로 제출되어 2021년 11월 1일 우리 위원 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서울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탄력적 사업운영을 통해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약칭: 지방기금법)」 제8조에¹⁾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지방기금법」제11조에²⁾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지출계획의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 4억 5천만원 중 당해연도에 8천만원만 지출하고, 3억 7천만원을 예치함으로써 예치금이 당초 15억 5천만원에서 19억 2천 2백만원 으로 24% 증가됨에 따라 제출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비가 당초 계획대로 지출되지 못한 이유는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 남북관계의 불확실성 지속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³⁾
- 따라서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은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변경안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¹⁾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²⁾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3) 2021}년도 추진 사업: '교실로 온(On) 평화통일', '우리는 평화지킴이', '평화통일 핵심리더 역량강화 연수'

□ 이상으로「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